

# 송인동116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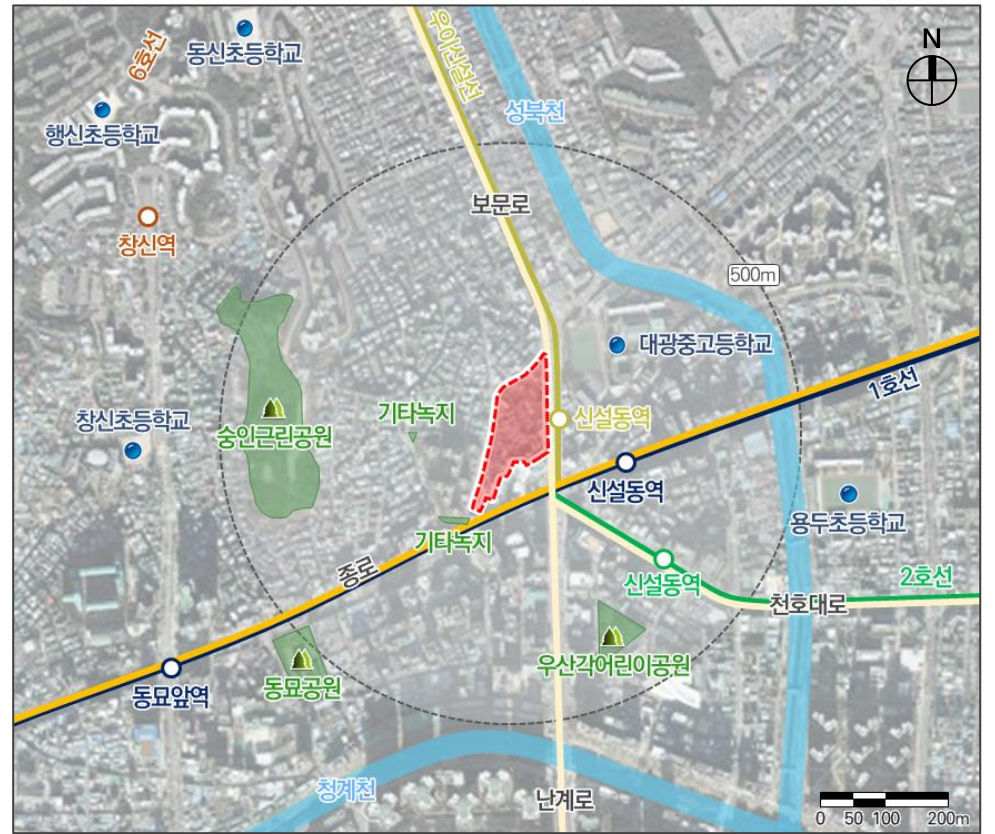
2026. 03.

## 대상지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1169번지 일대
면 적	14,153.7㎡
용도지역·지구	준주거지역 (98.1%), 일반상업지역 (1.9%)

## 정비계획 수립 사유

- 주변 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송인동1169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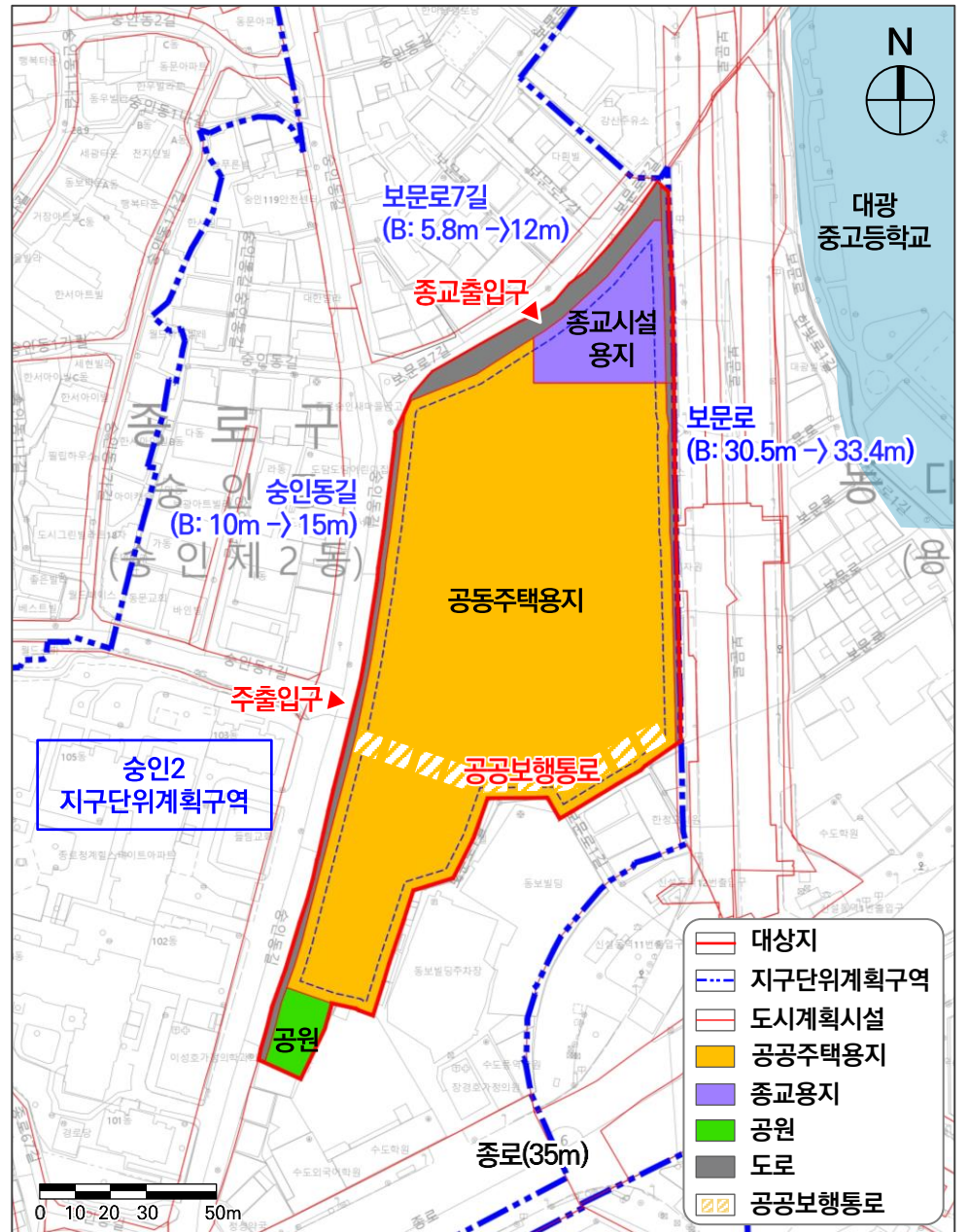
날 짜	내 용	비고
2020.09.21.	2020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765호>	
2021.03.29.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조건부) ※ 조건: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전 송인2 지구단위계획 지침과의 정합성 고려 계획 수립	
2021.06.28.	1차 주민설명회	
2021.12.13.	2차 주민설명회	
2022.04.15.	공공재개발 주민봉사단 구성 및 지원약정 체결 (주민-LH)	
2022.09.21.	3차 주민설명회	
2023.04.26.	4차 주민설명회	
2024.12.20.	후보지 취소 소위원회 자문 (보류)	
2025.05.27.	후보지 취소여부 검토결과 알림 공고 (취소 유예: 1년 이내 주민공람) <종로구공고 제2025-781호>	
2025.06.19.	서울시 사전기획자 회의 1차	
2025.07.11.	서울시 사전기획자 회의 2차	
2025.08.27.	준비위원회 구성 및 지원약정 변경 체결	
2025.09.23.	사전기획 워킹그룹회의 1차 (사전기획자, 시, 구, LH)	
2025.10.17.	사전기획 자문회의 1차	
2025.10.31.	주민참여단 설명회	
2025.11.04.	서울시 사전기획자 회의 3차	
2025.11.17.	사전기획 워킹그룹회의 2차 (사전기획자, 시, 구, LH)	
2025.11.25.	사전기획 자문회의 2차	
2025.12.17.	사전기획 주민설명회	
2025.12.31.	사전기획 완료	
2026.01.16.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제안	
2026.01.28.	주민설명회	
2026.01.28. ~ 03.0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2026.01.29. ~ 03.0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계기관 부서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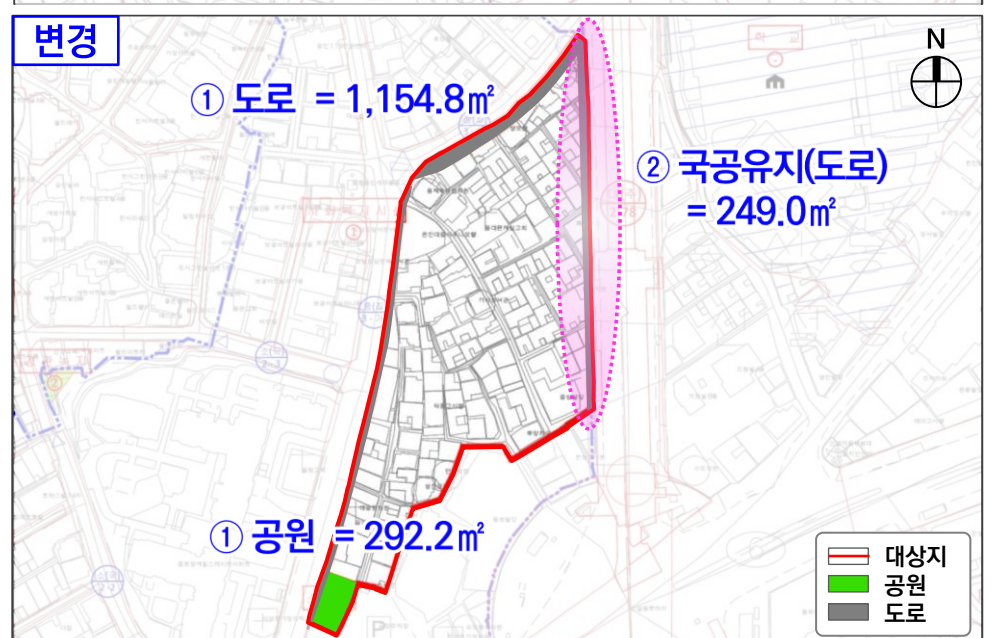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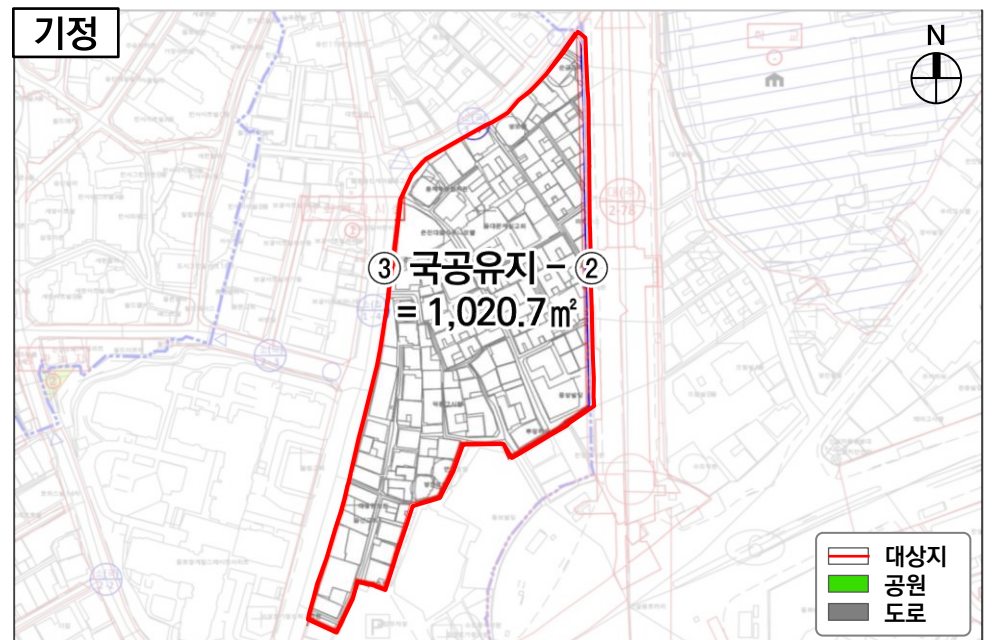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합 계	14,153.7	100.0	-
획 지	12,706.7	89.7	-
공동주택용지	11,632.7	82.1	-
종교시설용지	1,074.0	7.6	-
정비기반시설	1,447.0	10.3	-
도 로	1,154.8	8.2	-
공 원	292.2	2.1	-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	송인동 1169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면적 (m <sup>2</sup> )	소계	14,153.7
	국유지	1,269.7
	사유지	12,844.0
획지면적 (m <sup>2</sup> )	소계	12,706.7
	공동주택	11,632.7
	종교시설	1,074.0
<b>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면적 (도로+공원)</b> ① 1,447.0		
<b>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b> ② 249.0		
<b>대지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b> ③ 1,020.7		
<b>순부담 면적 (m<sup>2</sup>)</b> ① - ② - ③ 177.3		
<b>순부담률 (%)</b> 1.3		
<b>비고</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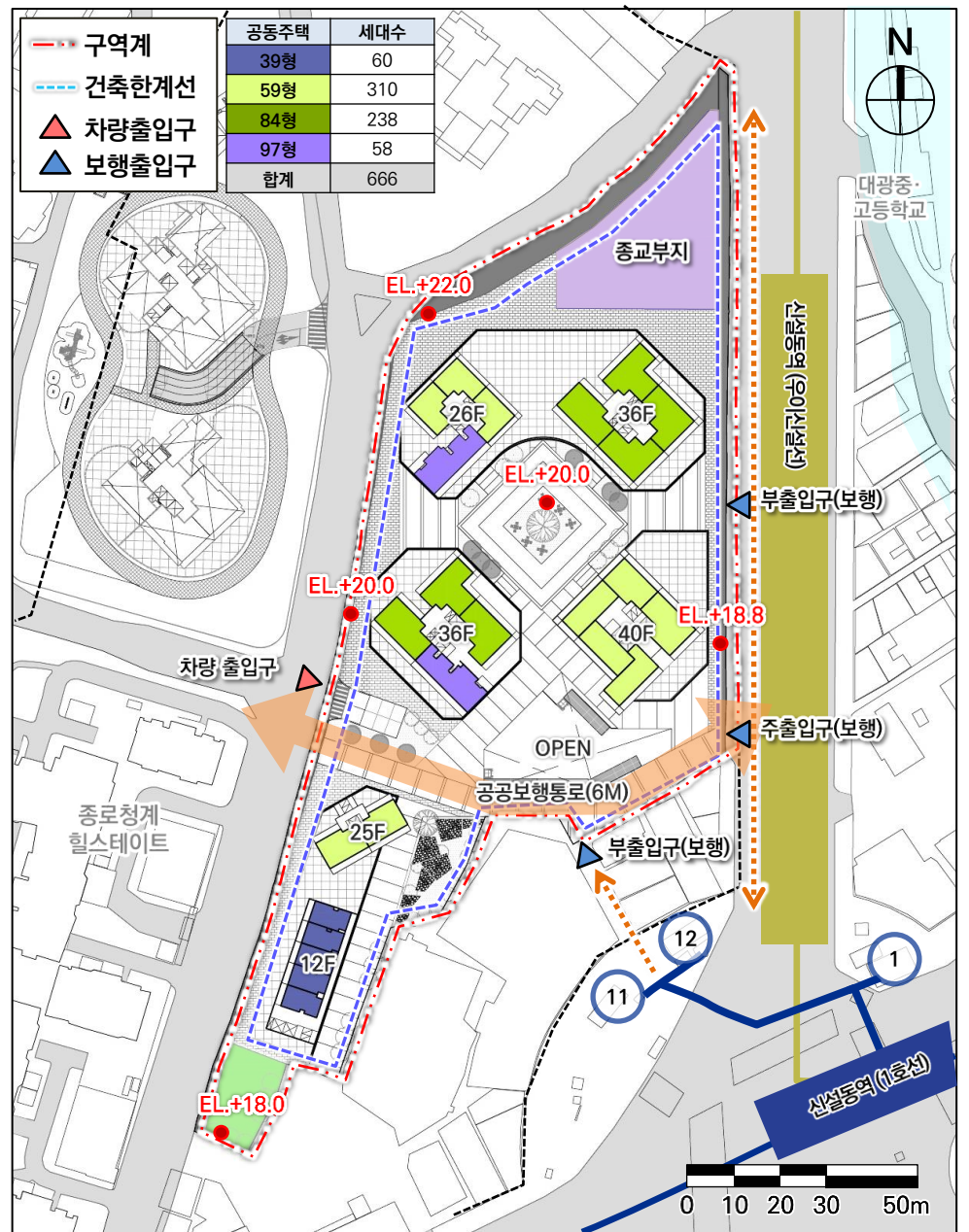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승인동1169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4,153.7	공동주택용지	11,632.7	승인동 116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60 이하	기준 : 320.0 허용 : 340.4 상한 : 346.7 법적상한 : 500.0 법적상한초과 : 600.0	125m 이하 (40층 이하)	-																										
			종교시설용지	1,074.0	승인동 336번지 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기준 : 300.0 허용 : 400.0	30m 이하 (10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수 : 666세대(분양 519세대, 임대 147세대)</li> </ul> </li> <li>※ 초과용적률(법적상한초과-상한)에 따른 세대수 : 314세대(일반분양 128세대, 공공임대 93세대, 공공분양 93세대)</li> <li>※ 주택 확보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 계획 : 91.3% (608세대)</li> <li>- 임대주택 건설(의무공공임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15.3% (54세대)</li> </ul> </li> <li>※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이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314세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②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① 54×30%=16.2 &lt; 21세대 또는 ② 352×5%=17.6 &lt; 21세대</li> </ul> </li> <li>※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이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314세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40% 이상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건설 : 666(전체세대수) - 125(토지등소유자 분양분) = 541세대</li> <li>541세대의 40% = 216.4세대 이상 공공임대 등 공급 필요 → 계획 : 240세대 (공공분양 포함)</li> </ul> </li> <li>※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포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계획</th> </tr> <tr> <th>세대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666</td> <td>100.0</td> </tr> <tr> <td rowspan="5">분양주택</td> <td>소 계</td> <td>519</td> </tr> <tr> <td>39㎡</td> <td>39</td> </tr> <tr> <td>59㎡</td> <td>233</td> </tr> <tr> <td>84㎡</td> <td>189</td> </tr> <tr> <td>96㎡</td> <td>58</td> </tr> <tr> <td rowspan="4">임대주택</td> <td>소 계</td> <td>147</td> </tr> <tr> <td>39㎡</td> <td>21</td> </tr> <tr> <td>59㎡</td> <td>77</td> </tr> <tr> <td>84㎡</td> <td>49</td> </tr> </tbody> </table>		구분	계획		세대수	비율(%)	계	666	100.0	분양주택	소 계	519	39㎡	39	59㎡	233	84㎡	189	96㎡	58	임대주택	소 계	147	39㎡	21	59㎡	77	84㎡	49
구분	계획																																			
	세대수	비율(%)																																		
계	666	100.0																																		
분양주택	소 계	519																																		
	39㎡	39																																		
	59㎡	233																																		
	84㎡	189																																		
	96㎡	58																																		
임대주택	소 계	147																																		
	39㎡	21																																		
	59㎡	77																																		
	84㎡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이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314세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②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로 건설 → 계획 : ① 54×30%=16.2 &lt; 21세대 또는 ② 352×5%=17.6 &lt; 21세대</li> </ul> </li> <li>※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이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314세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40% 이상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건설 : 666(전체세대수) - 125(토지등소유자 분양분) = 541세대</li> <li>541세대의 40% = 216.4세대 이상 공공임대 등 공급 필요 → 계획 : 240세대 (공공분양 포함)</li> </ul> </li> <li>※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포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상한용적률 : 346.7% 이하</th> <th colspan="3">법적상한초과용적률(건축계획) : 599.04% 이하</th> </tr> <tr> <th>정비계획 용적률</th> <th>법적상한초과 용적률 (건축계획)</th> <th>초과용적률 (법적상한초과-정비계획)</th> <th>초과용적률의 60%</th> <th>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공공분양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346.7%</td> <td>599.04%</td> <td>252.34%</td> <td>151.41%</td> <td>17,675.4㎡ (151.94%)</td> </tr> </tbody> </table>		상한용적률 : 346.7% 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건축계획) : 599.04%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초과 용적률 (건축계획)	초과용적률 (법적상한초과-정비계획)	초과용적률의 6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공공분양 포함)	346.7%	599.04%	252.34%	151.41%	17,675.4㎡ (151.94%)													
상한용적률 : 346.7% 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건축계획) : 599.04% 이하																																		
정비계획 용적률	법적상한초과 용적률 (건축계획)	초과용적률 (법적상한초과-정비계획)	초과용적률의 60%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계획 (공공분양 포함)																																
346.7%	599.04%	252.34%	151.41%	17,675.4㎡ (15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60% 이상 국민주택규모주택 건설 : 599.04(건축계획용적률) - 346.7(정비계획용적률) × 60% = 151.41% → 계획 : 151.94% (186세대)</li> <li>-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60%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주택 중 50%를 공공분양으로 전환 : 151.94% × 50% = 75.97% → 계획 : 75.97% (93세대)</li> </ul>																																		
심의 완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지역 유지 : 준주거지역</li> <li>•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용적률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 → 계획 : 20% (완화량)</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세부내용</th> <th>완화기준</th> <th>완화량</th> <th>계획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소형 주택</td> <td>4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 <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td> <td>최대 10%</td> <td>11,632.7 × 10% = 1,163.3㎡ &lt; 2,116.14㎡</td> </tr> <tr> <td>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 <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td> <td>최대 15%</td> <td>-</td> </tr> <tr> <td>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td> <td>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td> <td>최대 10%</td> <td>11,632.7 × 10% = 1,163.3㎡ &lt; 7,059.1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상한용적률 500.0%(준주거지역) × 120% = 600.0% → 계획 : 599.04%</li> </ul> </li> <li>•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6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용적률 599.04%(법적상한초과용적률 600.0%) - 정비계획용적률(346.7%) = 252.34%의 60%인 151.41%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계획 : 151.94%(186세대)</li> </ul> </li> <li>•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6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50%를 공공분양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1.96% × 50% = 75.97%를 공공분양으로 전환 → 계획 : 75.97%(93세대)</li> </ul> </li> </ul> <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30조</p>					항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계획량	소형 주택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최대 10%	11,632.7 × 10% = 1,163.3㎡ < 2,116.14㎡	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최대 15%	-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최대 10%	11,632.7 × 10% = 1,163.3㎡ < 7,059.18㎡												
항목	세부내용	완화기준	완화량	계획량																																
소형 주택	4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최대 10%	11,632.7 × 10% = 1,163.3㎡ < 2,116.14㎡																																
	40~5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최대 15%	-																																
	50~60㎡ 이하 분양주택 공급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전용면적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최대 10%	11,632.7 × 10% = 1,163.3㎡ < 7,059.1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후퇴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건축선 지정 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업부지</td> <td>건축한계선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td> <td rowspan="2">도면참고</td> </tr> <tr> <td>고층부 벽면한계선 : 보문로변으로부터 6m</td> </tr> </tbody> </table>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도면참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 보문로변으로부터 6m																							
구분	건축선 지정 내용	비고																																		
사업부지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도면참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 보문로변으로부터 6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소 조성 (B=6m, L=100m)</li> <li>- 신설동역 및 보문로에서 연계를 고려하여 동서축의 동선계획</li> </ul> </li> <li>• 열린단지 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 건축한계선(3m)를 활용한 보행공간 조성 및 담장 미설치로 열린단지 조성</li> </ul> </li> </ul>																																		

## 건축개요 및 배치도

구분		계획내용
도시관리계획 관련사항		준주거지역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면적 (㎡)		14,153.70㎡
건축면적 (㎡)		5,010.00㎡
연면적 (㎡)	전체	107,244.96㎡
	지상	70,344.96㎡
	지하	36,900.00㎡
건폐율		43.07% (법정 : 60% 이하)
용적률		599.04% (법정 : 600% 이하)
건축규모(높이)		지하4층 ~ 지상40층
주차대수	전체	895대 (법정 : 540대)
	공동주택	866대 (법정 : 518대)
	근린생활시설	29대 (법정 : 22대)



## 주민공동시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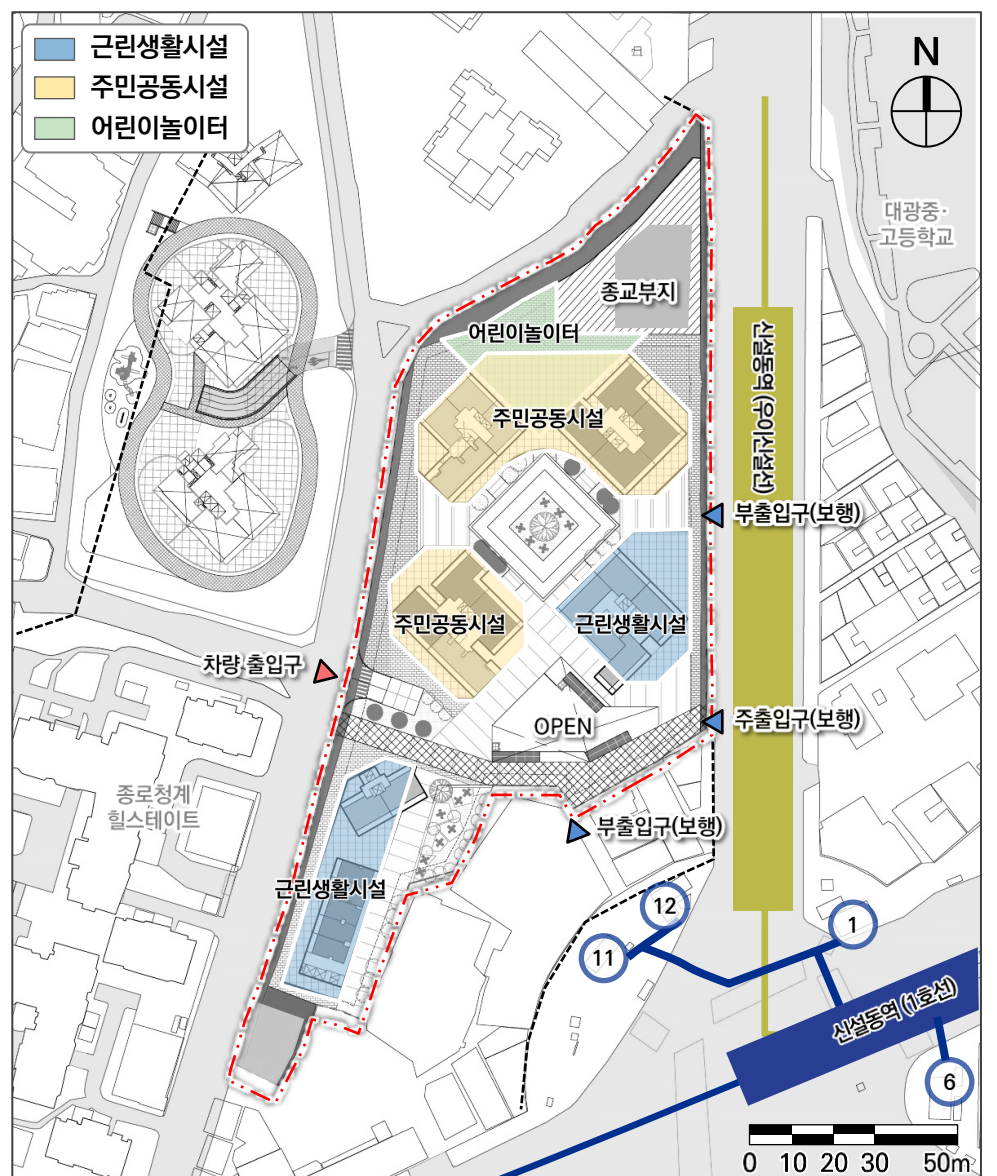
###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구분	면적(㎡)		비고	
	서울시 기준	계획(안)		
합계	-	6,066	-	
복리 시설	경로당	330㎡ 이상	330	500세대 이상
	작은도서관	158㎡ 이상	400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330㎡ 이상	330	5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	-	2,800	-
	돌봄센터	66㎡ 이상	90	500세대 이상
부대 시설	소계	-	3,950	-
	돌봄,고령(인센티브)	-	610	-
	관리사무소	40.8㎡ 이상	120	50세대 이상
기타 시설	경비실	-	20	-
	소계	-	750	-
	주민운동시설	-	500	5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	866	150세대 이상
	소계	-	1,366	-

### 주민공동시설 총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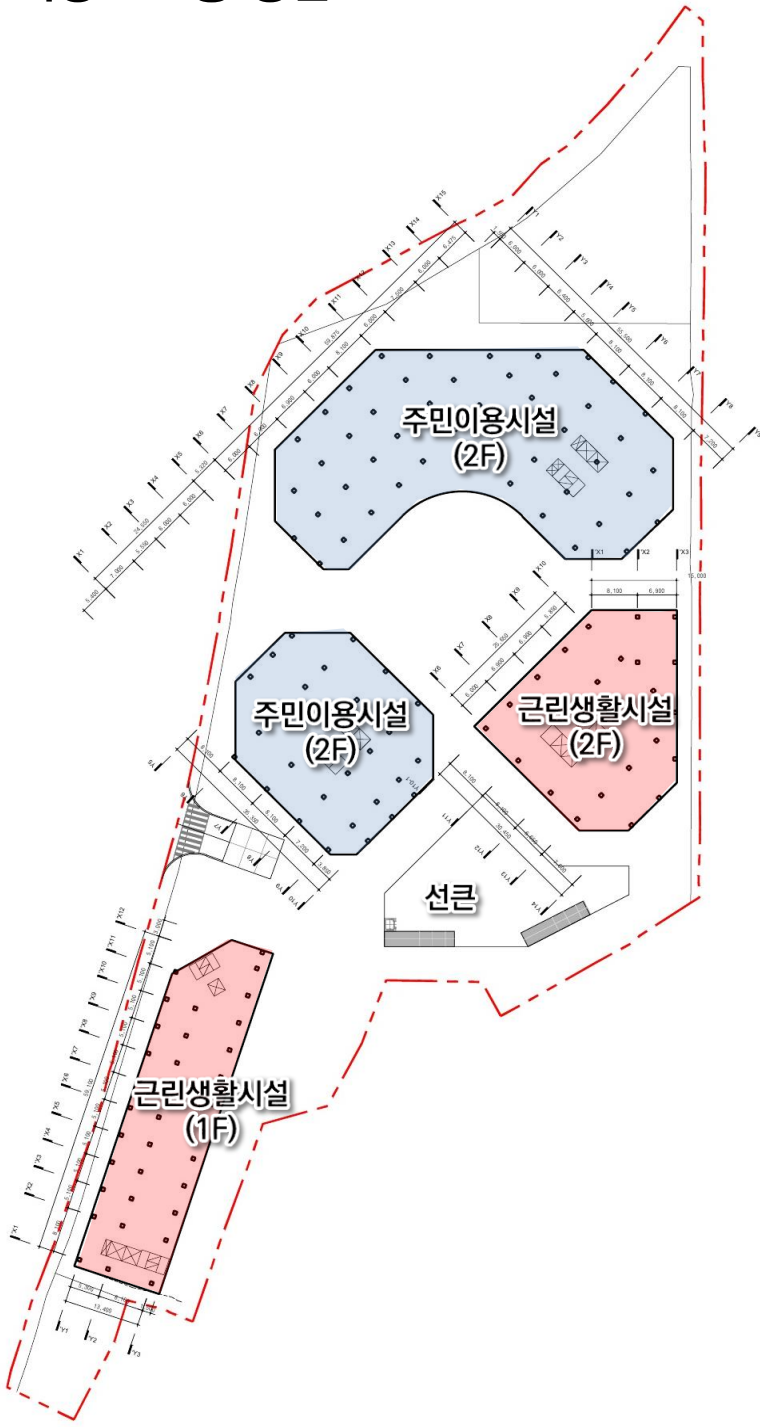
구분	총 면적 기준	산식	총 확보 면적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당 2.5㎡ 기준	666세대 x 2.5㎡ = 1,665㎡	5,316㎡ (서울시 2,081.25㎡ 기준대비 약 255.42%)
서울시 주택조례	기준면적 대비 25% 강화	666세대 x 2.5㎡ x 1.25 = 2,081.25㎡	

\* 총 확보 면적 중 부대시설은 산정에서 제외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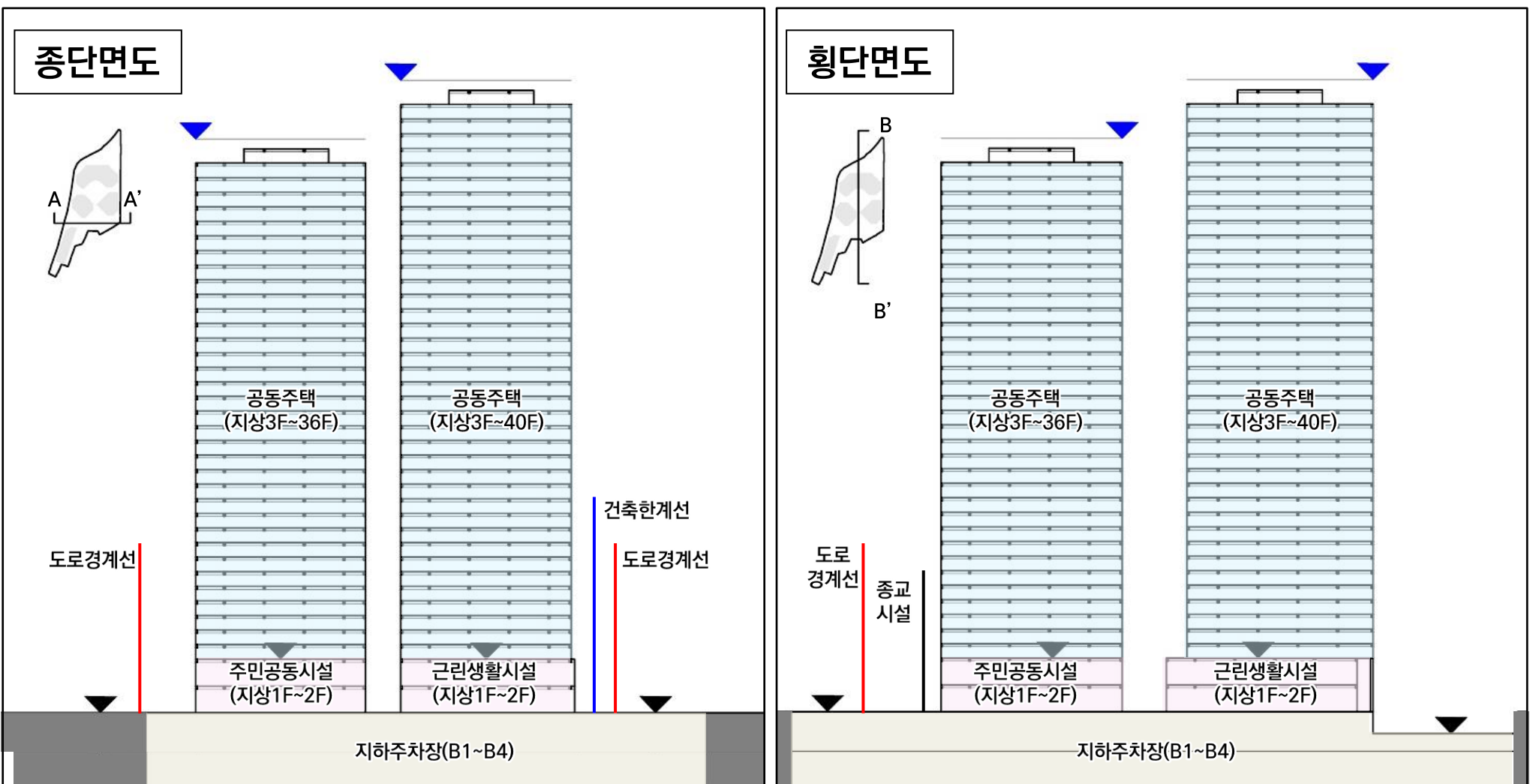
### 지상 1~2층 평면도



###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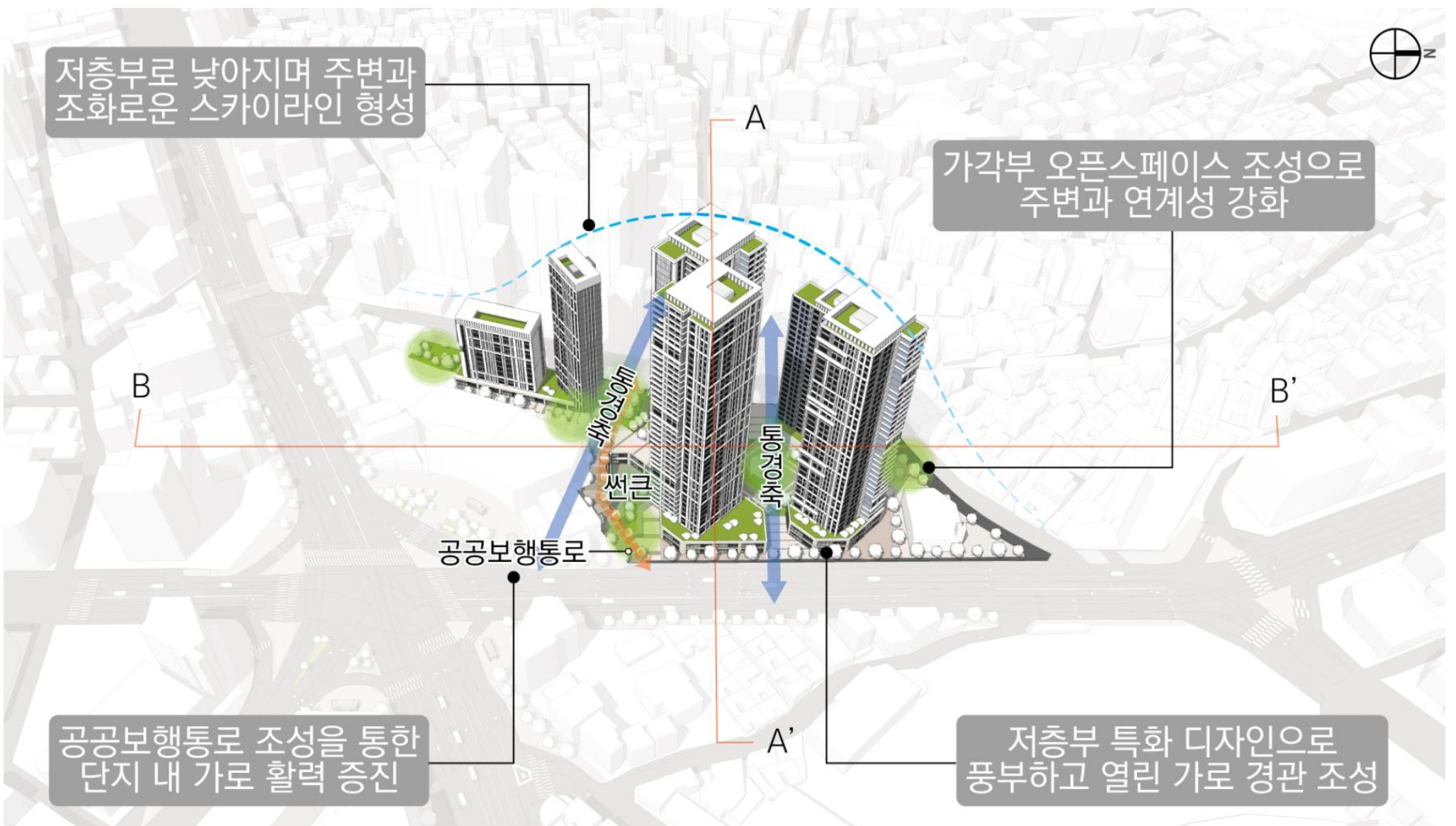
### 종횡단면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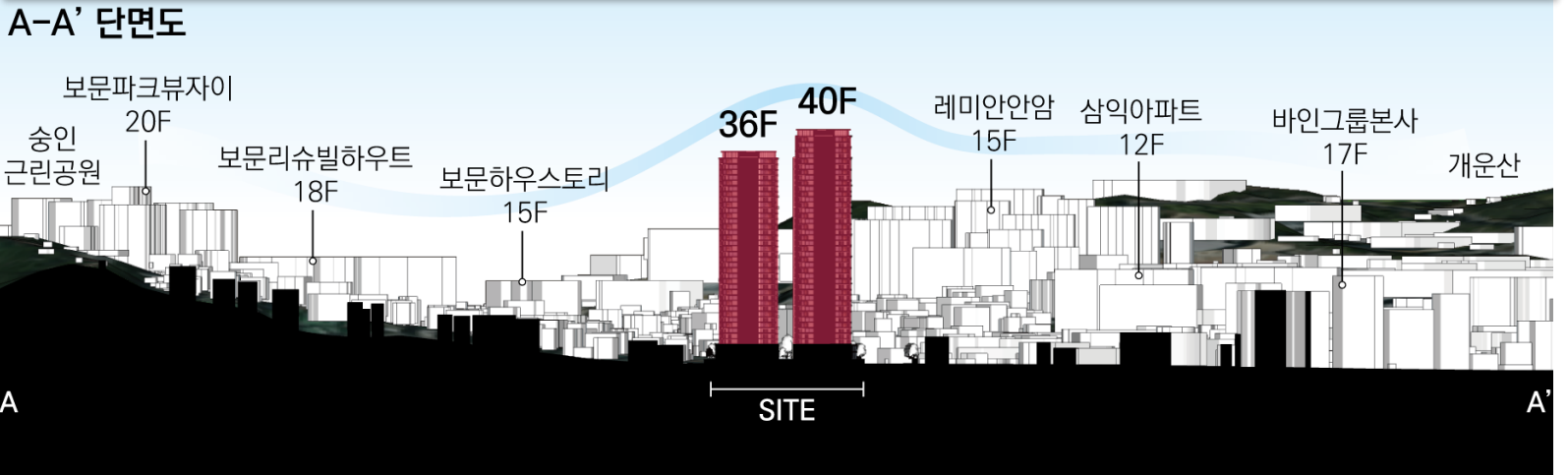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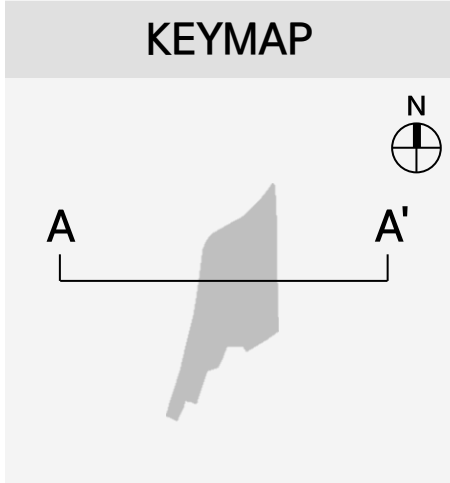


경관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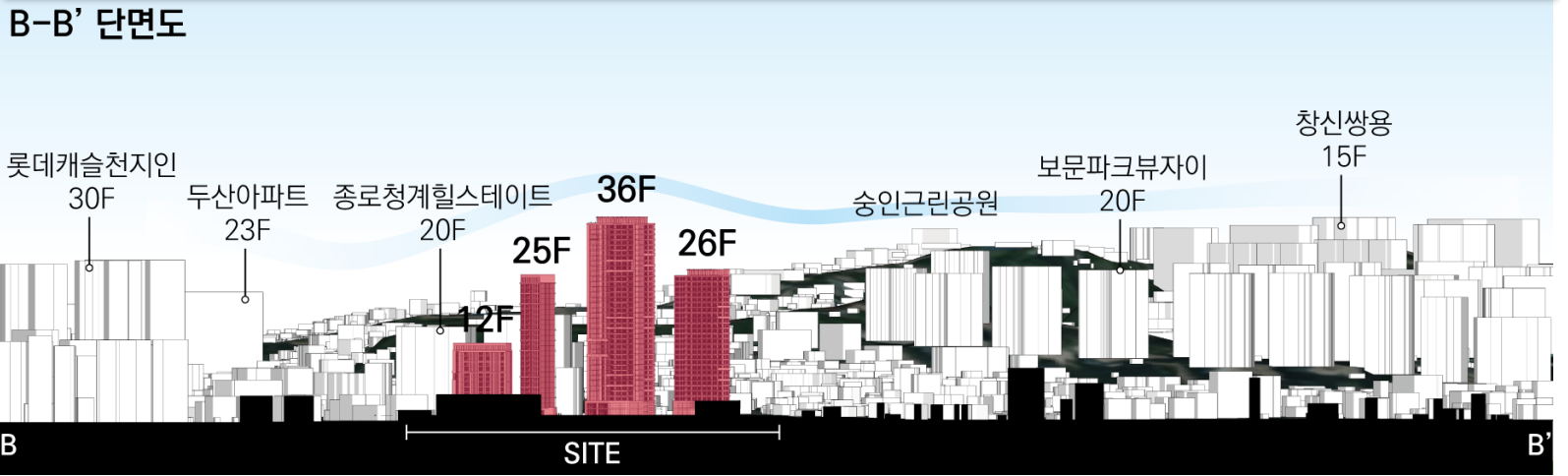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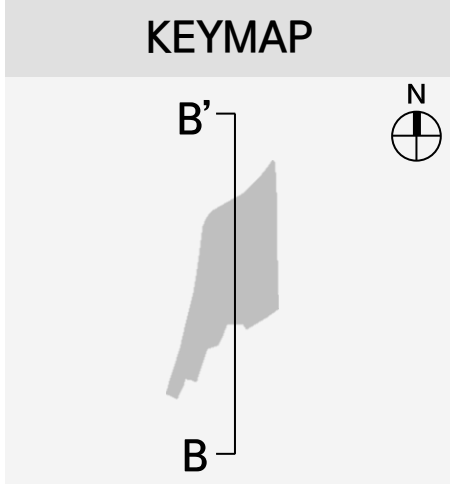
[A-A']  
동서측 스카이라인

- 동-서측의 스카이라인으로 주변에 저층주거지가 위치하며 배후로 중고층의 건축물이 위치함
- 대상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결절부로 고층 건축물을 활용한 상징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타워 슬림화로 개방감 형성



[B-B']  
남북측 스카이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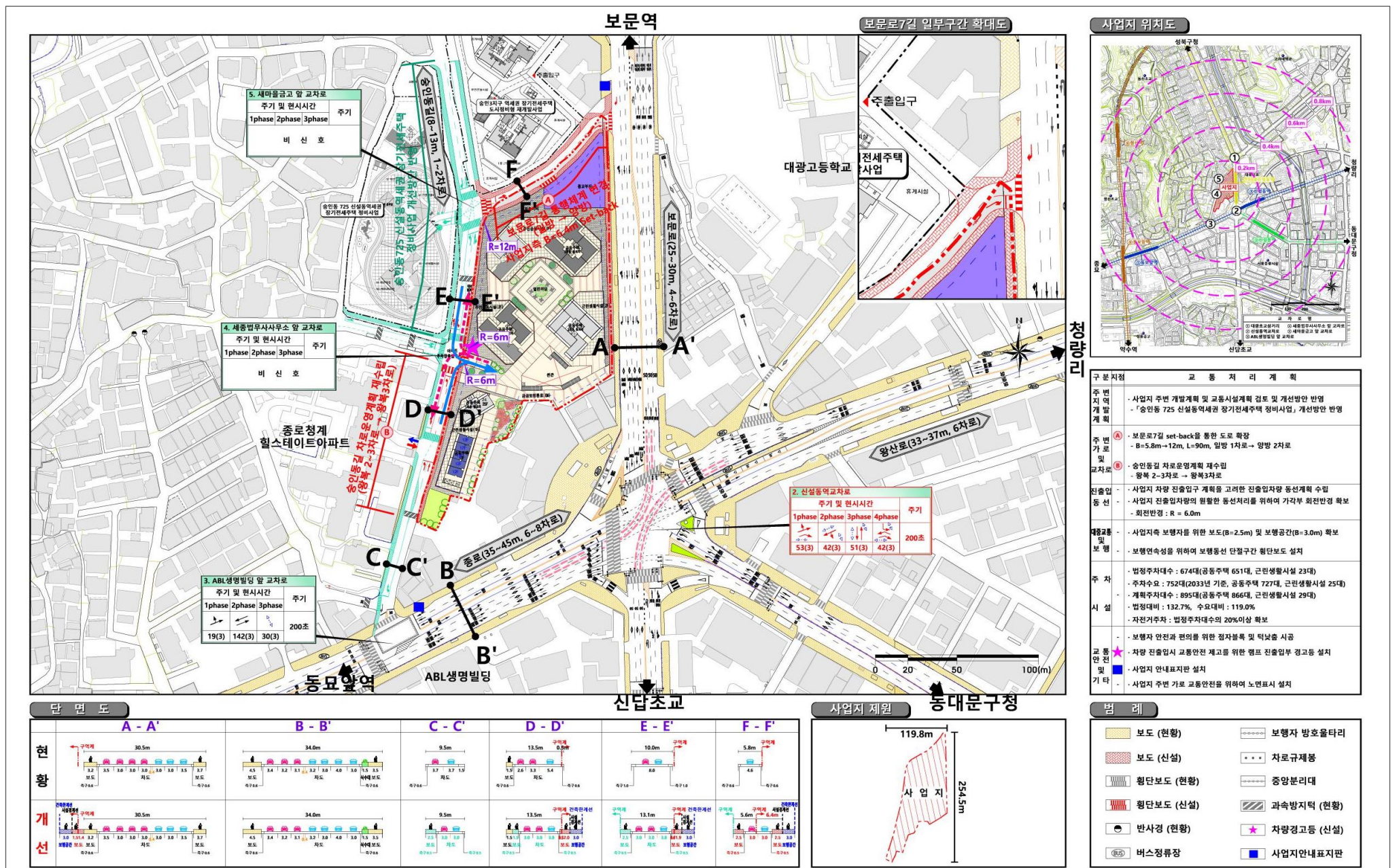
- 남-북측의 스카이라인으로 송인근린공원을 배후로 주변에 중저층 및 고층 건축물이 위치함
- 대상지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낮아지는 단계적 높이계획으로 주변의 공원 및 주거·상업시설과 조화로운 산형의 스카이라인을 형성



## 교통처리계획(안)

구분	지점	처리계획안
주변지역 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검토 및 개선방안 반영</li> <li>- 「승인동 725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입안진행중)」 개선방안 반영</li> </ul>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문로7길 set-back을 통한 도로 확장</li> <li>- B=5.8m→12m, L=90m, 일방 1차로→양방 2차로</li> <li>승인동길 차로운영계획 재수립</li> <li>- 왕복 2~3차로 → 왕복 3차로</li> </ul>
진출입 동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계획을 고려한 진출입차량 동선계획 수립</li> <li>사업지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각각부 회전반경 확보</li> <li>- 회전반경 : R=6.0m</li> </ul>
대중교통 및 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측 보행자를 위한 보도(B=2.5m) 및 보행공간(B=3m) 확보</li> <li>보행연속성을 위하여 보행동선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li> </ul>
주차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주차대수 : 674대 (공동주택 651대, 근린생활시설 23대)</li> <li>주차수요 : 752대 (2033년 기준, 공동주택 727대, 근린생활시설 25대)</li> <li>계획주차대수 : 895대 (공동주택 866대, 근린생활시설 29대)</li> <li>법정대비 : 132.7%, 수요대비 : 119.0%</li> <li>자전거주차 :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확보</li> </ul>
교통안전 및 기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및 턱낮춤 시공</li> <li>차량 진출입시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램프 진출입부 경고등 설치</li> <li>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li> <li>사업지 주변 가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면표시 설치</li> </ul>

## 교통처리계획도



## 정비계획 종합표

구분		사전기획 1차자문	사전기획 2차 자문	정비계획(안)	
시행면적		14,153.7㎡			
획지면적		12,879.0㎡			
건폐율		28.55%	42.44%	43.07%	
주용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기준	300%		320%	
	허용	320%		340.4%	
	상한	320%		346.7%	
	법적상한	500%			
	법적상한초과	600%			
순부담면적 (A+B+C)		5.0㎡	5.0㎡	177.3㎡	
정비 기반 시설	① 토지	도로	800.7㎡	1,154.9㎡	1,154.8㎡
		공원	474.0㎡	-	292.2㎡
		광장	-	119.8㎡	-
	② 국공유지	새로설치	300.0㎡	249.0㎡	249.0㎡
		용도폐지	969.7㎡	1,020.7㎡	1,020.7㎡
A 합 계(① - ②)		5.0㎡	5.0㎡	177.3㎡	
기반 시설 등	③ 토지(대지지분 포함)	-	-	-	
	④ 건축물(환산면적)	-	-	-	
	B 합 계(③ + ④)	-	-	-	
C 현금		-	-	-	
높이계획		125m 이하			
정비기반시설		보문로7길 도로확폭(5.8m→12m) 송인동길 도로확폭(10m→15m) 동측 시설도로 보도확보(30.5m→31m) 남측 소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보문로7길 도로확폭(5.8m→12m) 송인동길 도로확폭(10m→15m) 동측 시설도로 보도확보(30.5m→33.5m) 서측 광장 조성으로 동서측 보행동선 거점 조성	보문로7길 도로확폭(5.8m→12m) 송인동길 도로확폭(10m→15m) 동측 시설도로 보도확보(30.5m→33.4m) 남측 소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	왕산로, 보문로변 3m			
	벽면한계선	보문로변 6m			
단지 내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신설동역 및 보문로에서 연계를 고려하여 동서측의 동선계획			
	보행동선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연계된 오픈형 공간 조성			

## 건축계획 종합표

구분		사전기획 1차자문	사전기획 2차자문	정비계획(안)	
용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1,805㎡		11,632.7㎡	
연면적	합계	109,042.76㎡	111,414.96㎡	107,244.96㎡	
	지상	70,781.66㎡	70,354.96㎡	70,344.96㎡	
	지하	38,261.1㎡	41,060.00㎡	36,900.00㎡	
건폐율		28.55%	42.44%	43.07%	
용적률		599.59%	590.39%	599.04%	
높이계획		지상 40층 / 지하 4층			
계획주차대수 (법정주차)		797대(법정 628대) *세대 당 1.3대 이상	859대(법정 661대) *세대 당 1.3대 이상	895대(법정 540대) *세대 당 1.3대 이상	
주택 현황	공동 주택 (임대)	전체	579세대(186세대)	666세대(196세대)	666세대(147세대)
		39㎡	50세대 (15세대)	60세대(19세대)	60세대(21세대)
		59㎡	171세대(89세대)	310세대(114세대)	310세대(77세대)
		74㎡	98세대(32세대)	-	-
		84㎡	151세대(50세대)	238세대(63세대)	238세대(49세대)
		96㎡	109세대(분리형세대가능)	58세대	58세대
	오피 스텔	전체	84세대	-	-
		57㎡	84세대	-	-
	합계		663세대	666세대	666세대



종로구